



중국 다문화주의의 실태와 문제점

한족(漢族)과 소수민족(少數民族)의 융합에 관한 연구

박 병 구 (매니페스토 연구소 연구위원)

mayson2@hanmail.net



서론

중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그 자신을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 한다. 이는 중국이라는 세계 속에 복잡 ·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은 한족(漢族)과 소수민족간의 부단한 융합(融合)의 역사다. 현재 중국이 비록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중국민족의 주체는 한족이다. 한족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민족이 바로 소수민족이다. 거시적으로 봐서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이라는 이원적 민족구성 하에 소수민족의 한화(漢化)가 주요 추세다.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관계설정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문제이다. 먼저 역대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경내(境內)의 소수민족을 어떻게 융합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였다. 그러나 중국혁명을 이끈 소비에트 국가구조는 연방제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민족문제는 다민족 융합을 위해서 어떠

한 국가형식을 취해야 하고,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민족분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신중국(新中國)성립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왜 소수민족에 대해 연방제구상에서 소수민족구역자치제로 전환했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한족과 소수민족 융합의 형태

종족의 이동

황하강(黃河江) 유역에 출현한 여러 민족집단간 융합의 핵심은 화하족(華夏族)이었다. 화하족은 황하강 중하유역으로 생존범위를 확대해가면서 점차 한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족은 끊임없이 주변이민족을 흡수하고, 다른 이민족의 생존공간에 침투해 들어갔다. 중국의 역사는 각 민족이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며, 영토 또한 각 민족이 공동으로 개척하고 공고화 하였다. 중국의 역대정권은 왕조교체 · 권력과 영토의 확장을 통하여 자가발전과 외부환경을 안정화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화와 각종정책과 제도는 한족과 소수민족간에 종족이동을 가져왔다. 동한(東漢)의 흉노(匈奴)에 대한 속국화, 수 · 당(隋 · 唐)의 북쪽 영토확장, 진(晉)과 송(宋)의 남하(南下), 몽고의 중원 진입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족간의 이동이 이루어졌다.¹⁾ 또 역대통치자들은 행정과 군사수단으로써 인구를 수도부근에 집중시켰으며, 국경과 기타지역으로 강제이주정책도 실시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민족끼리 잡거(雜居)하는 다원적인 지역분포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 나라 이래 이슬람교를 믿는 서아시아인들이 중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원(元) 나라시기, 많은 한족들이 국경으로 건너갔고, 역으로 국경에 있던 각 소수민족들은 중원과 강남으로 이동해와 한족과 잡거하였다. 국경이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서아시아인들이 중국 경내로 들어왔으며 그들은 한족 · 몽고족등과 잡거하면서 점차 새로운 민족인 회족(回族)을 형성하였다.²⁾

명나라 초기에는 장강중류(長江中流)에서 사천분지(四川盆地)로, 산서(山西)에서 화북평원으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황하강 유역에 들어와 살던 거란족 여진족들은 각 민족과 장기간 교류를 통해 한족과 차이가 없게 되었고, 한족과의 통혼(通婚) · 한성(漢姓)으로 개명을 하였으며, 원나라 통치자들에 의해 한인(漢人)으로 불리게 되었다.³⁾ 20세기 전반기, 이민의 주류는 평원에서 산간 지역으로, 내지(內地)에서

1) 付春, “民族權利與國家整合”, 復旦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5.

2)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3)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중국이라는 세계 속에 복잡·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은 한족(漢族)과 소수민족간의 부단한 융합(融合)의 역사다.

국경으로의 이동이었다. 종족간의 이동이 민족융합을 가져왔지만, 봉건제도와 자연경제 하에서는 각 민족간에 일률적으로 진정한 평

등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으며, 각 민족간에 반목과 질시·민족 탄압·민족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른 민중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문화융합

중국 역대 왕조는 둔전(屯田)개발·변방경비·이민·황무지 개간·상업무역·관직취임·문화교류·경작지 개간·정복활동·난민유랑·왕조교체 등을 통하여 소수민족과 융합하였다. 문화융합은 중원지역문명의 주변문화에 대한 전파와 한족이 문화로써 화이(華夷)를 구분하는 관념에서 기원한다. 화(華)와 이(夷)를 구분하는 것은 화하족(華夏族)의 자기 정체성이 일찍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이론으로서 화이관(華夷觀)은 공자와 맹자 등 선진(先秦)유가 사상 하에서 형성되었다. 춘추시대, 융(戎)·적(狄)·만(蠻)·이(夷) 등 소수민족은 주(周) 왕실에 큰 위협적인 존재로 발전하였다. 중원의 각 제후국들은 패권쟁탈과정에서 “존왕양이”(尊王攘夷)를 기치로 내걸고 이들 소수민족과 길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화이관이 형성되었고 민족자각의식 또한 성숙하였다. 공자는 왕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 왕실 영토 이외의 이(夷)를 적대시하였다. 맹자 역시 공자의 이런 존왕양이 사상을 계승하였는데,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에게 말하길 “왕께서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를 굴복시켜 조공(朝貢)을 받고, 중국의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사방의 이민족을 다스리고자 합니다”(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欲闢土地，朝秦·楚，莅中國而撫四夷也)⁴⁾라 한 것은 맹자가 화(華)와 이(夷)를 명확히 구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화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자와 맹자는 문화로 보았다. 공자가 “나는 문화민족의 것을 가지고 미개인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미개인의 것에 변화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⁵⁾고 말했던 것

4) 『孟子』

5) 『孟子』

처럼 공자와 맹자는 문화로써 미개인을 변화시키려 하였다(用夏變夷).

역사적으로 보면, 중원왕조가 속민(屬民)을 구분할 때 항상 사용하는 범주는 화내(化內)와 화외(化外)다. 이른바, 화(化)는 한문화(漢文化)의 교화(教化)이며, 교화를 받아들일 때, 천자(天子)의 신민(臣民)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화외지민(化外之民)은 교육개화가 필요한 야만인(生番), 만이지속(蠻夷之屬)이다. 그래서, 화는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문화융합기능을 발휘하였다.⁶⁾ 예를 들어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는 낙양(洛陽)으로 천도한 후 한족의 전장제도(典章制度)와 생활방식을 모방하였으며, 선비족(鮮卑族)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족화(漢族化)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한어(漢語)를 학습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한족 성(姓)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선비족과 한인간의 통혼을 권장하였다. 효문제 그 자신은 선비(鮮卑)의 국성(國姓)인 탁발(拓跋)을 원(元)으로 바꾸었는데, 그의 이름을 원굉(元宏)이라 불렀다.⁷⁾

존왕양이 사상은 화하족(華夏族)을 위기에서 구했으며 동시에 화하족(華夏族)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화이관(華夷觀)은 주 왕실 정통혈통에 대한 유가의 강력한 지지인 동시에, 백성들의 주 왕실에 대한 충성과 국가 결속력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화이관(華夷觀)은 성군(聖君)으로 하여금 평천하(平天下)를 가능케 하였고, 폭군에게는 실천하(失天下)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화하족은 흥성(興盛)→ 쇠퇴(衰退)→ 재흥성(再興盛)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유가 대동(大同)사상의 궁극적 목표는 사해(四海)안은 모두 같은 형제(四海之內皆兄弟也)⁸⁾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맹자의 평천하(平天下)에서 평(平)의 대상은 화하(華夏)땅 뿐만이 아니라, 이(夷)가 점유한 지역까지 동시에 포괄한 개념이다. 문화융합은 문화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의도 있다. 중국체제 속에서 소수민족의 정치지위와 소수민족 개체의 신분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문명과 문화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격차 때문에, 소수민족은 중원지역의 문명을 모방하고 한문화를 학습하며, 중원의 중앙정부로부터 책봉(冊封)을 받고자 하였다.

중앙통제

중국은 제도상 중앙집권제도를 실행하였다. 중원과 주변부의 질서배분을 위한 중앙집권제도이다. 신중국성립전, 중국의 경제적 기초는 봉건자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제였고, 사회기초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종법사회였으며, 문화기초는 유가

6) 付春, “民族權利與國家整合”, 復旦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5.

7)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8) 『論語』

사상이 핵심이었다.

중원과 주변부의 질서배분을 위한 중앙집권제도도 발달했다. 중앙집권은 치국제도의 질서이며, 권력의 고도집중이었다. 중앙왕조의 권력과 권위의 강성·쇠퇴가 중국내부의 관계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엄격한 의미로 현대적인 민족국가가 아니라, 중앙이 주변부를 흡수하고 선도하는 공동체였고, 한족은 제국의 중원에 자리잡아 행정관리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황제의 직할 하에 있었다. 반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조직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를 띠었는데, 일부 소수민족의 수령(首領)은 지방관리로 임명되기도 했다. 한족 인접지역의 소수민족구역, 예를 들어, 내몽고(內蒙古)·청해(青海)·운귀(雲貴)·광서(廣西) 지역은 토사(土司)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다시 외곽으로 더 나아가면, 지방의 권력은 더욱더 컸다. 예를 들어, 한 나라는 지금의 신강(新疆) 지역에 서역도호부를 설치하였고, 당 나라는 이 지역에 안서(安西)와 북정대도호부(北庭大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이는 모두 군정을 담당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였다.⁹⁾

원 나라 중앙정부는 선정원(宣政院)을 설치하고 토번(吐蕃)을 관할하였으며, 서장(西藏)에 관리를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케 하였다. 명나라는 서남(西南)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원 나라의 통치방법을 답습해서 선위사(宣慰司), 토지부(土地府) 등 각급 정부기관을 설치하고, 그 지역 소수민족수령을 세습직인 토사장관(土司長官)으로 임명하였다. 영락제(永樂帝) 재위시에, 서남지역(西南地域)의 두 개의 선위사(宣慰司)가 반란을 일으키자, 명조는 병력을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이곳에 귀주포정사사(貴州布政使司)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토사아문(土司衙門)을 취소하고, 중앙정부에서 임기가 한정된 즉, 세습되지 않는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개토귀류(改土歸流)라 한다. 명조 때에는 대규모의 개토귀류를 실시하지는 않았다.¹⁰⁾

청조 역시 다른 민족지역의 특징에 근거하여 다른 통치조치를 취하였으며, 몽고족 지역에는 맹기제도(盟旗制度)를 실행하였고, 서장(西藏)은 지방의 알하(噶廈)정부에 의하여 다스려졌으며, 중앙정부는 주장대신(駐藏大臣)을 파견하였다. 서장지역에 책봉제도를 통해 정교일치제도를 실행하였다. 신강 위구르족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에는 백극(伯克)제도를 실시하였다.¹¹⁾ 강희제(康熙帝)초년에 운남(雲南)에서 평서왕오삼계(平西王吳三桂), 광둥(廣東)의 평남왕상가희(平南王尚可喜), 복건(福建)의

9) 付春, “民族權利與國家整合”, 復旦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5.

10)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정남왕견정충(靖南王耿精忠)이 반란을 일으켰다. 강희제는 이 난을 평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의 개토귀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726년, 옹정제가 서남지역에 대규모의 개토귀류를 실시하여, 청조는 변정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다.¹²⁾

명과 청의 서장지역에 대한 지배 관리의 공통점은 종교 우두머리에게 책봉(冊封)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명 때에는 서장지역을 오사장(烏思藏)이라 부르고, 이곳에 위소(衛所)를 설치하였다. 장인(藏人)을 각급관리로 임용하였으며, 승관제도(僧官制度)를 창설하고 각 교파수령(敎派首領)에게 책봉을 하였다. 이때 최고의 승관(僧官)을 법왕(法王)이라 칭하였다.¹³⁾

순치제(順治帝)는 라마교황교(喇嘛敎黃敎)의 수령인 달라이5세(五世達賴)에게 금책(金冊)과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하였으며, 그를 천하의 불교사무를 관리하는 달라이라마(達賴喇嘛)¹⁴⁾로 책봉하였다. 후에 강희제는 또 다른 황교영수5세선반(黃敎領袖五世班禪)을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尼)¹⁵⁾로 책봉하였는데, 이후, 역대 달라이와 반선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책봉을 거친 후에야만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옹정제시기에는, 청조가 서장에 대신을 주둔시켰는데,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달라이와 반선과 함께 서장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건륭제(乾隆帝) 때에는, 서장귀족이 달라이와 반선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정부가 금병(金瓶)을 하사(下賜)하고 금병체첨(金瓶掣籤)제도를 실시하였다.¹⁶⁾

중앙이 제국의 체계를 통하여 형성한 중심과 주변, 전체와 국부의 질서 배분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중앙왕조의 권위와 집권체제의 확립은 중화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핵심요소였다.

중국국민당과 소수민족융합

쑨원(孫文)은 한족민족주의와 중화민족민족주의(中華民族民族主義)사이에서 갈등하였다. 1905년, 쑨원은〈민보(民報)·발간사(發刊詞)〉에서, 구제탈로(驅除鞑虜), 회복중화(恢復中華)의 한족민족주의를 주장했다. 국민당은 1912년 1월 1일, 남경정부(南京政府)가 성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소수민족정책을 제정하였다. 그 정책의 핵심은

11) 付春, 2005. “民族權利與國家整合”, 復旦大學校博士學位論文.

12)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13)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14) 달라이라마는 “지혜가 바다와 같은 높은 스승”이란 뜻이다..

15) 반선액이덕니는 “보배와 같이 귀한 대학자”란 뜻이다.

16) 『歷史-北京大學留學生復習資料』, (北京大學招生辦公室編印, 2006年.)



국민당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은 소수 민족자체의 내재적 발전과 자주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민족동화(民族同化)이다. 이 정책사상과 쑨원의 민족동화사상은 상관성이 있다. 쑨원은 일면, 오족공화(五族共和)를 주장하였으나,

신해혁명(辛亥革命) 후에, 만주가 일본의 세력범위내로 들어가는 등 열강의 세력확장의 국면 앞에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막연한 오족민족주의(五族民族主義)가 아니라, 한족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쑨원은 한족이 기타민족 동화를 위해 중화민족을 결성하고, 국가를 부흥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민족주의를 진흥시키고, 장족·몽고족·회족·만주족을 한족화시켜, 최대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한인의 자각임을 역설하였다.¹⁷⁾

1924년 1월,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쑨원은 삼민주의(三民主義)를 다시 해석한 신삼민주의(新三民主義)를 내놓는데, 신삼주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대내적으로 중국경내의 모든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대외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자구해방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쑨원이 최후에는 민족평등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민족동화사상은 훗날 남경국민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1935년 11월 23일, 국민당 5차 전국대표자대회는 중변정(重邊政), 핑교화이이고국족이성통일(宏教化以固國族而成統一)을 선언하였다. 소위 핑교화(宏教化)란, 한족의 문화로써 소수민족을 동화한다는 의미이고, 이고국족이성통일(以固國族而成統一)에서 국족은 한족을 가리킨다. 즉,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족이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⁸⁾ 이러한 정책은 민족차별과 멸시의 표현이다. 귀주(貴州)를 예로들면, 1944년, 귀주성 주석 양썬(楊森)은 소수민족의 복장은 분중졸열(笨重拙劣)한 물건이므로, 소수민족이 다른 복장·문자·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양썬은 그의 부하를 시켜, 몇 년 후 귀주에서 특수한 언어와 특이한 복장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였다. 항일전쟁시기, 장제서(蔣介石)가 귀주에 도착해 시찰했을 때, 양산의 이런 조치에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고, 표창하였다.¹⁹⁾

국민당의 이런 소수민족 동화정책은 소수민족자체의 내재적 발전과 자주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하게 되는

17) 楊策·彭武麟主編, 1999年, 『中國近代民族關係史』,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8) 楊策·彭武麟主編, 1999年, 『中國近代民族關係史』,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 黃義仁, 1999年, 『布衣族史』, 貴州: 貴州民族出版社.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중국공산당과 소수민족융합

중국공산당은 중국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연방제(聯邦制)와 구역자치(區域自治)이다. 구역자치는 연방제하에서의 자치가 아니다. 연방제하에서의 자치단위는 연방의 구성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자치는 이런 단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주권리로서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통일된 국가하에 성립된 자치구가 형성하는 구역자치는 국가전체발전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상대적 자주와 독립이므로, 독립자주권리가 비록 소수민족의 자결권과 같은 현실의 기초하에 있지만, 법률과 제도상으로 자치권은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넘겨준 권리이다. 구역자치가 나타내는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 현상과 연방제가 나타내는 민족과 국가관계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연방제: 민족자결

중국공산당이 중국민족과 국가문제에 관하여 제기한 최초의 주장은 민족자결과 연방제의 통일이었다.

1922년 7월,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산당은 〈중국공산당민족강령〉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국인민은 먼저 모든 군벌을 타도해야 하고, 인민에 의한 중국통일, 진정한 민주공화국건립, 군벌세력의 팽창을 없애면서, 변경지역에 있는 인민의 자주를 존중하며, 몽고(蒙古)·서장(西藏)·회족(回族) 변경의 세 자치방(自治邦)을 재촉하여 중화연방공화국으로 재연합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임²⁰⁾을 천명하였다. 공산당은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화연방공화국을 제시하였다. 공산당이 당시의 연성자치(聯省自治)를 반대한 것은 중화연방공화국이 바로 민족자결문제, 국가통일문제, 다민족국가의 민족국가건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였다.²¹⁾

1923년 6월, 중국공산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서 합의된 당 강령초안을 통과시키고 몽고·서장·신강·청해 등지와 중국본부의 관계는 각 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하

20) 『中共中央文選集』(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21) 董世明. 1994년 4期. “中國共產黨的民族區域自治政策形成與發展”. 『中共黨史研究』.

다고 하였다.²²⁾

1928년 중국공산당제6차 전국대표자대회의 정치결의안은 통일중국, 민족자결승인이었다. 이 결의안에서 제국주의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며, 민족자결권을 인정하였다. 군벌 국민당정부를 퇴진시키고, 소비에트정부를 건립하기로 결의하였다.²³⁾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과〈중화공농병(中華工農兵)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의 중국경내소수민족문제결의〉는 각 민족은 소비에트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중국 경내 소수민족자결권을 승인하는 동시, 소수민족이 자신의 자치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 소수민족 자치구역내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와 민족언어사용을 발전시키며,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간부를 배양한다,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경향을 반대하고, 국민당(國民黨)·군벌과 지주자본가를 반대하며, 소수민족의 혁명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구체적으로 돕고 보호한다고 결의하였다.²⁴⁾

1931년 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자에서 통과된 〈중국경내의 소수민족문제의 결의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조건적으로 이 지역 소수민족자결권을 승인한다, 즉, 몽고·서장·신강·운남·귀주 등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민들은 비(非)한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그들이 중화소비에트공화국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들 단독으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은 그곳 인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회의에서 통과된〈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은 중국소비에트정권은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승인하며, 약소민족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을 승인한다. 몽고·회족·장족·묘족·이족(黎族)·고려인(高麗人) 등 중국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들은 모두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다. 중국소비에트연방에 가입, 탈퇴하거나, 자신의 자치구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다고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²⁵⁾

1934년 제정된 〈중국농공홍군적정치부관여묘요민족중공작원칙적지(中國工農紅軍的政治部關與苗瑤民族中工作原則的指示)〉에서, 묘민(苗民)스스로 묘민소비에트공화국이 되든지, 혹은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일개 자치구역이 될 것인지, 혹은 인민정부를 건립할 것인지는 완전히 묘민 자신이 결정할 사안임을 밝혔고,²⁶⁾ 1935년8월, 〈중공중앙정치국회의결의〉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

22) 『中共中央文選集』,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23) 위의 책.

24) 위의 책.

25) 위의 책.

26) 위의 책.

수민족의 의사에 근거해서 국가를 조직하는 원칙과 방침은, 먼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그들의 독립국가건설을 반드시 도와야 하고, 중화소비에트공화국중앙정부는 공개적으로 몽고족·회족·장족 등의 민족이 일어나 독립국가를 건립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아울러 독립국가건설 투쟁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들이 독립국가를 설립한 후에, 그들의 자유의사원칙에 의해, 중화소비에트공화국과 연합해 진정한 민족평등·민족단결의 중화소비에트를 건립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²⁷⁾ 동년 12월, 중화소비에트중앙정부가 발표한 <대몽고인민선언(對蒙古人民宣言)>은 내몽고 민족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하고, 자신의 정부를 건립할 수 있으며, 기타민족과 연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분립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였다.²⁸⁾ 이러한 정신은 1936년 5월에 발표된 <대회족인민선언(對回族人民宣言)>중에도 똑 같이 있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족 자신의 일은 완전히 회족 자신이 해결하며, 회족 구역에 속하는 일체의 정치·경제·종교·습관·도덕·교육과 기타의 사정은 회족이 건립한 독립자주정권이 해결한다고 하였다.²⁹⁾

단일제(單一制): 민족자치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후, 일본의 만주침략과 서방국가의 대중국 침략이 가속화 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과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이 구역자치를 하도록 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은 노구교사변(蘆溝橋事變)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공격을 개시하였다. 생존과 해방이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우선순위 문제가 됨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민족과 국가 문제에 관한 정책선택에 있어 민족자결에서 민족자치로 전면적인 조정을 하게 되었다. 노구교사변 후, 중국은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개시하였고, 연방제도 설계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길로 정책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1937년, 마오쩌둥(毛澤東)은 몽고인·회족인과 기타소수민족을 동원하고, 민족자결과 자치의 원칙하에, 공동으로 항일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⁰⁾ 여기서 마오쩌둥은 이미 민족자결과 민족자치를 동시에 제안했고, 1938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이 소집한 6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연방제의 주장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국가의

27) 위의 책.

28) 위의 책.

29) 위의 책.

30) 『毛澤東選集』(北京:人民出版社, 1991.)

전제하에 민족구역자치제 건립을 주장하였다. 마오쩌둥은 이 회의에서 몽(蒙)·장(藏)·묘(苗)·요(瑤)·이(彝)·번(番)등 각 민족과 한족은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공동항일의 원칙하에, 자신의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가지며, 한족과 연합하여 통일국가를 건립하자는 주장을 하고,³¹⁾ 통일국가 건립의 전제하에, 소수민족은 민족자치구역을 건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1941년 5월에 공포한 <합감영변구시정강령(陝甘寧邊區施政綱領)>³²⁾에서 민족평등의 원칙, 몽민족(蒙)·회민족(回民族)과 한족은 정치·경제·문화상의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몽민족·회민족의 자치구를 건립하며, 몽민족·회민족의 종교신앙과 풍속습관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935년과 1936년에 발표한 <대몽고인민선언>, <대회족인민선언> 그리고 1941년 5월에 공포한 <합감영변구시정강령(陝甘寧邊區施政綱領)>을 비교하면, 선언(宣言)은 소수민족이 자신의 민족정권을 건립하는 것을 고무하고, 민족자결을 실현하며, 아울러 분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음을 천명했으나, 강령(綱領)은 몽민족·회민족의 자치구건립을 명확히 주장하였다.³³⁾ 이러한 변화는 중국공산당의 민족자결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왔음을 알리는 것인데, 이는 더 이상 민족자결을 주장하지 않고, 연방제구상에서 단일제 하의 민족구역자치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1946년 8월, 동북각성대표연락회의에서 통과된 <동북각성시(특별시)민주정부공동시정강령(東北各省市(特別市)民主政府共同施政綱要)>에서도 “동북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몽민족·회민족의 민주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라고 강조하였다.³⁴⁾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민족구역자치정책을 중국민족과 국가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상정한 후, 이를 전국범위로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47년 5월1일, 중국공산당이 건립한 첫 번째 성급(省級) 민족구역자치정권인 내몽고자치구역의 성립은 중국공산당이 중국민족과 국가문제에 관한 원칙과 방침, 즉 민족구역자치의 실행이 이미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성립은 신해혁명(辛亥革命)후, 중국민족과 국가건설의 구상에 관하여, 오족공화(五族共和)에서부터 중화연방공화국구상 후, 단일제하에서의 민족구역자치의 공화국으로 최종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근대사상 여러 차례 반(反)침략전쟁이 있었지만, 국가정권의 통일과 국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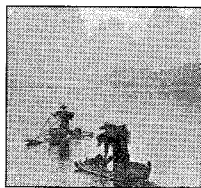
31) 『中共中央文選選集』(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32) 董世明, 1994년4期, “中國共產黨的民族區域自治政策的形成與發展”, 『中共黨史研究』.

33) 『中共中央文選選集』(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34) 『陝甘寧邊區參議會文獻匯輯』(科學出版社, 1958.)

순의 일시적 완화, 민족의 상대적 통일만 있었을 뿐, 민족의 진정한 통일은 없었다. 중국 근대사상 대부분의 시간은 반제반봉건(反帝反



중국 공산당은 더이상 민족자결을 주장하지 않고, 연방제 구상에서 단일제 하의 민족구역 자치정책으로 전환하였다.

封建)투쟁의 병존이었으며, 국가통일과 민족통일의 병존은 없었다. 그러나 항일전쟁은 중국민족운동과 민족통일의 신기점(新起点)이 되었다.

신 중국 성립 후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1949년 9월, 신 중국 성립 전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건의 하에 각 민족과 각 당파대표는 공동협상을 거친 뒤,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건립하기로 하고, 당시 임시헌법의 성격을 가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을 통과시켰다. 이 강령은 신 중국의 민족정책이며, 민족자치구역 확정의 기본국책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제1장 총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인민해방전쟁을 끝까지 진행할 책임을 지고, 중국의 전 영토를 해방시키며, 통일 중국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장 민족정책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서로 단결하여 행동하며, 제국주의와 각 민족 내부의 공적을 반대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각 민족이 서로 우의 협력하는 대 가정으로 만든다. 대 민족주의와 협잡한 민족주의를 반대하며, 민족간의 질시·압박과 각 민족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1조,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은 민족구역자치를 반드시 실시하고, 민족이 모여 사는 인구의 다소와 지역의 크기에 따라 민족자치기관을 각각 건립한다. 모든 민족이 서로 잡거하는 지방과 민족자치구역내에서는, 각 민족

은 당 정권기관에 상당한 대표를 갖는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소수민족은 균등히 통일된 국가군사제도에 따라 인민해방군 참가와 지방인민공안부대를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각 소수민족은 균등히 그 언어문자를 발전시키며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하며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의 인민대중들의 정치·경제·문화·교육건설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민족자치구역의 정치지위에 대해 1954년 열린 제1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민족자치제도를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기재하였다. 1984년 5월 31일, 민족자치지역의 경험에 기초해서,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민족구역자치법>을 통과시키고, 동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2001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수정 반포된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구역자치제도가 국가의 기본정치제도임을 명확히 하였다.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일반지방 국가권력기관의 권력 이외에, “현지 민족의 정치·경제와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인 1947년에 몽고족 지역에 대해 중국 최초의 성급(省級) 소수민족자치지방인 내몽고자치구를 건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부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에 대해 전면적인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였다.

1955년 10월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성립, 1958년 3월의 광서 좡족자치구의 성립, 1958년 10월의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성립, 1965년 9월의 서장자치구성립에서 2003년 현재까지, 총 155개의 민족자치지방을 건립하였다. 중국의 자치지방은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 3급으로 나뉜다. 3급 행정지위를 구분하는 근거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와 구역면적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기본 이론

민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마오쩌둥은 항일전쟁시기 중화민족의 개념문제에 대해, 소수민족을 민족과 부족으로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민족이라 통칭했다. 또한 그는 민족을 국가와 계급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족문제·민족문제·계급문제간의 관계에 있어 마오쩌둥은 종족문제는 실질적으로 계급문제이며, 사유재산사회에서 민족투쟁은 실제 계급투쟁의 문제이고, 따라서 계급투쟁은 민족투쟁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마오쩌둥의 중국민족문제해

결의 이론과 정책의 핵심은 민족평등·단결·자치·발전으로 압축된다. 민족자치 지역의 이론과 정책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1931년에 소수민족의 자치구역건립을 주장하고, 1938년 각 소수민족은 한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공동으로 항일한다는 원칙하에서, 자신의 사무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족과 연합하여 통일 국가를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중화대가정론(中華大家庭論)은 항일전쟁 중 소수민족이 제국주의를 배격하는 과정에서 한족과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형성된 측면이 있다. 1945년, 1947년 각 소수민족은 민족자치의 권리를 가짐을 허락받았으며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이 평등자치의 권리를 가짐이 승인되었다 공산당과 모택동은 각 민족인민들의 민족민주혁명과정 중에서, 민족자치지역으로써 중국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형식과 중요제도를 점차 확정한다 소수민족발전의 이론과 정책에 대해 마오쩌둥은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오쩌둥은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양종(兩種) 민족주의를 반대하며,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 모두 민족단결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³⁵⁾

덩샤오핑(鄧小平)의 소수민족정책관

중국민족문제의 기본사상에 관하여 덩샤오핑은 소수민족문제는 아주 중요하며, 복잡한 문제이므로 상당한 장기성을 요한다고 말하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제정한 민족정책은 민족간의 장벽을 없애야 하며, 각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민족문제는 국방의 공고화·국경의 안보·국가통일의 중대문제이며 민족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고, 서남지역이 가장복잡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족문제의 성질에 관하여, 덩샤오핑은 1979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5기 2차 회의 개막사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 민족문제는 계급문제라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현재 중국의 민족관계는 기본적으로 각 민족 노동인민간의 관계이며, 민족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민내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민족평등단결문제의 기본사상과 정책에 대해 덩샤오핑이 강조한 진정한 민족평등의 함의는, 첫째, 사회주의 중국의 민족문제는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둘째, 민족의 평등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평등을 의미한다.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를 민족단결의 기초로 삼는다. 셋째, 시대발전에 필요한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한다고 압축된다. 덩샤오핑은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이 국내민족문제를 해결

35) 圖道多吉 主編, 『中國·民族理論與實踐』,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5年.)

하는 기본정책이자 중요한 정치제도이며, 민족문제해결에 있어 중국이 취하는 정책은 민족공화국연방제도가 아니라 민족구역자치제도이며,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에 민족구역자치를 진정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⁶⁾

결론

전근대시기 중국은 화이지변(華夷之辨)의 관념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진 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후 중국역사상 많은 왕조 교체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사회지배구조와 사상은 변치 않았다.

화이지변은 민족의 평등성과 융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화이의 구분이 소수민족이 중원에 대한 침략에 기인한 것이지만, 한족통치자 역시 무수히 많은 소수민족을 약탈·학살·정복했다.³⁷⁾ 화이지변은 한족이 정통이며, 소수민족은 비정통이라는 대한족주의를 조장했고,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결국 세계주류에서 탈락했다.

근대 항일전쟁의 최대공적은 외부대상과의 항쟁을 통해 중국국가와 중화민족, 즉 국가개념과 민족개념이 전인민으로 확산됨으로써 중국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항일전쟁 이전의 중국국가는 분열되어 있었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통일과 민족통일은 다르다. 국가통일은 국가통치계급이 대내적으로 호령하는 통일이고 민족통일은 한 국가의 각 민족이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요구와 의지의 통일이다. 민족통일은 국가통일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³⁸⁾

현대민족국가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주권이다. 즉 국가는 국민이 조직한 사회이고, 일정한 영토를 점유하며, 외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 민족권리의 핵심은 민족자결권, 민족자치권, 민족평등권이다.

현재 중국은 국가주권을 민족자결권에 우선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일·국가이익과 민족자결권·민족분열주의를 어떻게 조화 극복하느냐에 중국의 미래가 있다.

36) 圖道多吉 主編, 『中國·民族理論與實踐』,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5年.)

37) 路金龍·任慧英, 2005年6月, 華夷之辨的錯誤及其危害, 西安建築科技大學學報.

38) 劉大年, 『抗日戰爭時代』, (北京: 中共文獻出版社, 1996年.)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in China

Byeong-Ku Park (Researcher, Manifesto Institute)

Key-words: Multiculturalism, China, the Hanzu, Self-Determination

China consists of 56 ethnic groups including the Hanzu. The history of China showed continuous merging processes between the Hanzu and other ethnic minority groups.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ation of the Hanzu and the merging process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then it analyzes the Chinese dynasties and governments' policies on ethnic minority group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clare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thnic problems, but it introduced a new policy to establish 155 ethnic minorities' autonomous areas after the Sino-Japanese war. At recent tim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unification and national interest, not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erefore, multiculturalism in China will depend on how the Chinese government will solve problems resulted from collisions between national and ethnic values.
